주 문

1. 피고 C는 원고에게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,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